

공포
부경

기안용지

분류기호 서번호	법무 181.7 - 240 (제화번호 307)	전 권 규 정 전 권 주 장
처리기간	4.21	
시행일자		
포손년한		
보조 기관	제1부시장 기획관리관 법무담당관	법제계장 : 김광시
기안책임자	김광시	1976. 4.
경유 수신 참조	국안참조	발신 44조
제목	서울특별시경찰국 당직구정중 개정규정	
제1안	내부규제	
<p>현행 서울특별시경찰국 당직구정중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사시 당직 국장으로 하여금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조항을 개정하여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발령하고자 합니다.</p>		
첨부	1. 운령안 1부 2. 경무 181 - 10682(76.3.9)로 1부 공.	
제2안		
수신 제목	문화공보실장 시보 게재 회피	발신 법무담당관
<p>서울특별시경찰국 당직구정중 개정규정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시보에 게재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
첨부	문령안 1부 공.	

4.21
시장

검인
1976.4.21
문화공보실장

정서

관인

발송

제 목

수 신 경무부장

발 신 법무담당관

제 목 훈령 개정 통보

서울특별시경찰국 당직규정중 개정규정이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
바람이므로 개정되었기 통보하오니 시행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.

첨 부 훈 령 안 1부 갈.

서울특별시 경찰국 강직규정중 개정

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

1976년 4월 21일

서울특별시장 구라춘

서울특별시 경찰국 당직규정중 개정규정

서울특별시경찰국 당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9조 중 "임기종전의"를 "후장필요한"으로 하여 본문을 제 1항으로 하고, 동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(2) 당직 필 본직 직원은 제 1항의 타상이변이 발생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기동학구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개 정 이 유

비상이벤 발생시 당직국장으로부터 하여금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
특 서울특별시경찰국 당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연행	계정
<p>제19조 당직중 비상이변이 발생하였을 때는 당직과장은 암기용변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국장 및 각 과장에게 급보하여야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신 설 -</p>	<p>제19조 (1) 당직중 비상이변이 발생하였을 때는 당직과장은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국장 및 주 과장에게 급보하여야한다.</p> <p>(2) 당직 및 본직 직원은 제1항의 비상이변이 발생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기동 마귀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.</p>

민방위 참여하여
유비무환 실천하자

서울특별시

경부 181 - 10682

76. 3. 9.

수신 서울특별시청

담	당	법제재장	법무담당	공
[Handwritten Signature]				간

참조 법무담당관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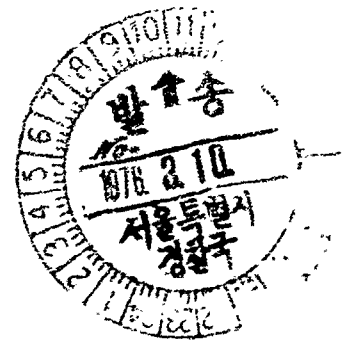
제목 서울특별시 경찰국 당직 규정 개정

서울특별시 경찰국 당직 규정 (70. 9. 1 서울특별시 훈령 제 337 호)
을 별첨 내용과 같이 개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개정사유

내용

신구대조표 각 1 통. 당.



경정 이세익

장 국 장

정부공문서 기재제 27조 2항의 규정과 의하여
경찰국장 손달용 전결

개 정 사 유
--*-*-*-*-*-*-*-*-*-*-*

서울특별시 경찰국 당직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
유사시 당직 과장으로서 임기응변의 응변을 기할수
있도록함.

서울특별시 경찰국 당직 규정을 다음과같이 개정한다.

1976년 3월 일

제 19 조 다음과같이 개정한다.

제 19조

- 1) 당직중 비상이변 발생하였을 때는 당직과장은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국장 및 과과장에게 금보 하여야 한다.
- 2) 당직 및 본직 직원은 진항의 비상이변 이 발생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 1 차적으로 기동 야격대의 임무를 수행 할수 있다.

신 구 대 조 조



신	구
<p>제 19 조</p> <p>1) 당직중 비상이변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직과장은 일기응변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국장및 과과장에게 금보 하여야 한다.</p> <p>2) 당직및 본직 직원은 전항의 비상이변이 발생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 1 차원으로 이동여과대의 임무를 수행 할수있다.</p>	<p>제 19 조</p> <p>당직중 비상이변 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직과장은 일기응변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국장및 과과장에게 금보하여야 한다.</p>